

海上保險에서의 告知義務違反에 대한 對立的 解釋論과 告知違反 效果

金 鍾 七 *

- I. 序 論
- II. 告知義務의 法理的 性質과 學說
 - 1. 告知義務의 概念
 - 2. 告知義務의 法理的 性質
 - 3. 告知義務에 대한 學說的 見解 및 根據
- III. 告知義務 對象의 比較檢討
 - 1. MIA와 商法上的 告知義務者 및 對象
 - 2. 不告知와 不實告知
 - 3. 重要한 事項의 事例
 - 4. 告知가 必要없는 事項
- IV. 告知義務 違反의 對立的 解釋論과 그 效果比較分析
 - 1. 告知義務 違反 要件에 대한 對立的 解釋論
 - 2. 立證責任原則
 - 3. 告知義務 違反의 效果
 - 4. 告知義務 違反에 대한 韓國民法과 MIA와의 比較
- V. 結 論

I. 序 論

保險은 同種의 危險을 느끼는 다수인들이 통계적, 과학적 기초에 의거 保險料를 釀
出하여 특정인이 우연한 사고발행시에 보상하는 사회경제적 제도이다. 이는 동

* 中央大學校 客員研究委員, 經營學 博士.

질적위험(homogeneous risk)의 결합을 통하여 大數의 法則(the law of large number)에 의거 위험을 평균화하여 保險金額과 保險料를 산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위험을 올바르게 測定하여 위험의 인수여부, 인수할 경우에 보험료, 담보조건 등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가 바로 被保險者이다. 피보험자는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목적의 위험을 측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最大善意(utmost good faith; ubrrimae fidei)에 따라 告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最大善意의 原則은 被保險者 뿐만 아니라 保險者에게도 요구되기 때문에 보험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것이 海上保險契約에서도 널리 강조되어 왔으며¹⁾, 보험계약자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함으로써 保險者에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保險契約에서의 最大 善意의 原則(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이 적용되는 경우는 대개 告知義務(the duty of disclosure)와 擔保(warranty)가 있다²⁾.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가 告知義務를 행하는데 있어서 最大선의에 입각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할 것이며, 最大선의에 입각하여 保險者와 保險契約者간의 擔保事項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最大선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擔保에 관하여는 국내에서도 많이 있었지만 告知義務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研究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지의무의 法理的 性質과 이의 타당한 學說을 검증해보고, 고지의무의 대상인 『모든 重要한 事項(every material circumstance)』이 함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保險契約 當事者간에 紛爭과 解釋에 오해의 소지가 많아 이의 判斷基準을 MIA와 사례를 통해 정립하고자 한다.

한편, 被保險者가 告知義務를 위반시 이의 성립요건을 검토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효과를 韓國商法과 比較하여 分析하고자 한다.

1) Edwin W. Patterson, Essentials of Insurance Law, 2nd ed., 1957, p.378.

2) Robert Merkin, Colinviaux's Law of Insurance, Sweet & Maxwell, 1990, p 97

II. 告知義務의 法理的 性質과 學說

1. 告知義務의 概念

告知義務란 保險者가 위험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特定事實의 存在 또는 狀態를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보험계약의 체결전에 口頭나 書面으로 陳述하여야 할 의무이다.³⁾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며, 만약 보험계약자가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解止할 수 있다.

보험계약이 다른 一般契約의 形態와 다른 점중의 하나가 保險契約者의 告知의 義務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의무를 故意 重大過失로 인하여 위반할 때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取消할 수 있다.⁴⁾

英國 海上保險法 제18조 제1항에서 『피보험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피보험자는 통상의 업무상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모든 중요한 사항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피보험자가 그러한 고지를 하지 못한다면 보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도 『신중한 保險者가 保險料를 산정함에 있어서 또는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단에 영향을 주는 모든 중요한 사항은 중요한 것이다』라고 규정하여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와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와 부실고지(misrepresentation)를 하지 않을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고지의 의무는 해상보험계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에 존재하는 특유한 제도인 것이다. 고지의 의무는 보험자가 그 이행을 강요하거나 또는 그 불이행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選擇權이 있다.⁵⁾

3) Michael J. Mustill and Jonathan C.B. Gilman, *Arnou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Stevens & Sons, 16th ed., S. 679.

4) 韓國 商法 第651條.

2. 告知義務의 法理的 性質

일반적으로 義務라는 것은 義務者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며, 법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다. 私法上 義務者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권리자가 직접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또는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告知義務가 진정한 의미의 의무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다.

① 前提條件說 : 고지의 의무가 保險契約成立前에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진정한 의무는 아니다. 왜냐하면, 보험자는 고지의무에 대응하는 청구권을 가지지 않으며 고지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또는 그 이행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도 없고 단지 그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 아래서 그 契約을 해지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계약의 解止를 阻止하기 위한 前提條件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② 義務說 : 고지의무는 強制履行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진정한 義務는 아니나, 고지의무가 이행됨으로써 보험자에게 이익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保險契約者등이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前提로서만 파악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이를 강제력이 약한 의무로 보아야한다는 설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기대하는 行爲規範으로서의 의무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⁶⁾

③ 任意規程說 : 고지의무에 대해서 상법상 임의규정이라는 학설⁷⁾과 판례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이라하고 보험계약자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견해이다.

이상의 諸學說중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이 전제조건설이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또는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義務違反의 효과로서 保險契約을 단지 解止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前提條件으로서 保險契約者

5) E.R. Hardy Ivamy,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Law, Butterworths, 1975, p. 105.

6) 美國에서는 告知義務 違反의 效果로서 保險者의 損害賠償 請求權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法規에서는 告知義務는 진정한 法的義務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加藤由作, 海上保險總論, p. 43

등이 지는 간접의무라고 할 수 있다.⁸⁾ 고지의무는 保險契約法에서 특유하게 인정하는 법률상의 義務이기는 하지만 보험계약자에게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진정한 법적인 의무는 아니고 계약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자기의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묵시적인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밖에서 인정되는 보험계약법상의 특수한 의무에 속한다.⁹⁾

3. 告知義務에 대한 學說的 見解 및 根據

告知義務의 根據는 保險의 本質的 必要性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고지의무의 근거에 대해서 多數說이 존재한다.

(1) 善意說

海上保險契約은 사기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에 의해 행해진 정보의 고지 및 意思表示에 관해서 엄격한 법적용을 받는다. 게다가 最大善意의 原則은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 질때 사실의 고지 및 의사표시에 아무런 제한이 되지 않는다¹⁰⁾. 가령,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해서 최대선의의를 갖고 행동하지 않으면 계속담보조항(held covered clause)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을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¹¹⁾.

이 선의설은 英國海上保險法상에 海上保險契約의 當事者가 最大 善意(utmost good faith)에 입각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被保險者는 당연히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 1항¹²⁾에서 해상

8) 鄭熙喆·梁承圭, 商法學原論(下), 42面.; 徐燉正, 商法講義(下), 法文社, 1992., 354面.; 孫珠璜, 商法(下), 博英社, 1995, 344面.; 崔基元, 商法學概論, 博英社, 1995, 769面.

9) March Cabaret Club and Casino, Ltd. v. London Assurance(1975) 1 Lloyd's Rep 169.; 梁承圭, 保險法, 101面.

10) R.J. Lambeth, Templeman on Marine Insurance Its Principles and Practice, 6th ed, Pitman, 1986, p.20

11) Overseas Commodities v. Style (1958) 1 Lloyd's Report 546. ; 繼續擔保條項에 의해 本 事件에서 保險目的物에 대한 明細上의 誤謬는 善意가 아닌 誤謬이기 때문에 被保險者는 保險目的物의 記述上의 誤謬가 있는 경우에도 繼續擔保條項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고 判示한 바 있다.

보험계약은 최대선의에 바탕을 두어 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성질에 입각한 것이다. 따라서 선의설(principle of good faith)의 입장은 보험계약이 최대선의 계약이기 때문에 被保險者는 契約을 체결함에 있어서 保險者의 危險測定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Carter v. Boehm사건에서도 Mansfield판사는 『危險을 測定할 수 있는 根據가 되는 特定狀況은 대부분 被保險者만이 알고 있다.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사기를 방지하고 保險契約의 善意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¹²⁾.

保險契約은 射倖性이 있기 때문에 最大善意의 立場에서 保險契約者들에게 성실한 고지를 하게 하여 불량위험을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道德的 危險(moral risk)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2) 射倖說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발생시 保險者가 책임을 지는 射倖契約(aleatory contract)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사행계약에 있어서는 그 사행사실에 관한 當事者의 知識을 均等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설이다.

보험제도란 보험계약자나 被保險者의 投機的 또는 冒險的 性格인 射倖性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한 위험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당위론적 결과라는 것이다.

(3) 擔保義務說

이 설에 의하면 保險契約은 有償契約(remunerative contract)으로서 담보의무가 생기며 보험계약자는 그 불고지 또는 不實告知로 인하여 숨겨진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유상계약에 있어서 擔保責任은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책임이

12) MIA 17(1) . Insurance is uberrimae fidei. ---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and if the utmost good faith be not observed by either party, the contract may be avoided by the other party.

13) E.R. Hardy Ivamy, Casebook on Insurance Law, 4th ed., Butterworths, 1984. p. 7.

지만,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는 계약의 효과는 아니고 契約成立前에 있어서의 책임인 것이다. 한편 이 설은 고지의무의 법적성질을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한정되고 이 제도의 실질적 근거를 다루지 아니한 점에 단점이 있다¹⁴⁾.

(4) 默示契約說

묵시계약설에 의하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을 구성하는 요소중 묵시적 조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성질상 당연히 묵시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 合意說

보험契約은 諾成契約(consensual contract)이며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有效하다. 위험에 관한 사실을 보험자가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無效가 되므로 고지의무의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保險契約의 경우에는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일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告知義務가 존재한다는 것이다¹⁵⁾.

(6) 危險測定說

이 說은 保險制度의 合理的 運營을 위하여 保險事故發生의 可能性을 合理的 統計的 計算을 기초로하여 보험금액과 보험료의 수급균형이 필요하다. 보험자는 保險契約에 관하여 危險率을 측정하여 이를 인수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적절한 보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告知義務란 危險選擇의 資料가 될 만한 사실을 保險者가 전부 조사하기란 곤란하기 때문에 保險契約者로 하여금 이런 중요한 사항을 告知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의 실무적 관점에서 保險者는 위험의 성질과 적절한 保險料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참된 情報를 고지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 위험측정설은 保險事故가 발생하여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게되는 피보험자는

14) 野津務, 前掲書, 116面.

15) A.G. Guest, M.A. Anson's Law of Contract,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p. 261.

보험자가 보험금과 보험료의 균형적인 算出을 위하여 위험률을 측정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가 있는 것이다.

Park는 "위험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대부분 피보험자만이 알고 있다. 보험자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피보험자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언급하고 있어 위험측정설을 지지하고 있다.¹⁶⁾

이와 관련하여 英國海上保險法 제18조 2항에서도 신중한 보험자(a prudent insurer)가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또는 위험의 引受與否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피보험자가 保險者에게 告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험측정설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이 설은 保險制度의 構造的 特殊性을 고려할 때, 특별히 인정한 獨自的인 制度로서 현재의 통설로 인정되고 있다.¹⁷⁾

(7) 法律的 特殊說

그 외에도 告知義務는 保險契約의 特殊한 성질에 기인한 特殊한 제도라고 하는 설이 법률적 특수설이다. 그러나 이의 限界는 어떠한 점이 특수한 것인지의 실질적, 내용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¹⁸⁾

(8) 韓國 判例의 立場

이상과 같이 告知義務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위험에 관한 동일한 정보를 보험자가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전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保險者는 危險의 성질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옳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되며¹⁹⁾, 도덕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진다. 따라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근거는 保險事故發生의 蓋然性을 측정하기 위하여 위험측정의 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있다는 危險測定說이 지배적인 통설이다.²⁰⁾

16) E.R.Hardy Ivamy, Marine Insurance, Butterworths, Fourth ed, 1985, p. 39.

17) 今村 有, 海上保險契約法論(上), 損害保險事業研究所, 1979, 127- 128面 ;

徐燉珏, 商法講義, p. 218. ; 鄭熙喆, 商法要論, p. 47. ; 孫珠瓚, 商法, p. 45.

18) 野津務, 前掲書, p. 158.

19) William B. Vance, Law of Insurance., 3rd ed., 1951, pp.364-365.

20) 梁承圭, 前掲書, 102面.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위험측정설의 입장에서 보험회사의 설문표에 기재된 질문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그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²¹⁾, 이를 고지한 것으로 본다²²⁾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일본의 판례²³⁾에서도 “商法上の 告知義務는 保險事業의 經營上 保險者가 引受하려고 하는 危險의 測定에 중요한 事項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잘 알수 있는 지위에 있는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에게 법률로서 부담시킨 것이다”라고 危險測定說에 의거한 판결한 바 있다.

告知와 관련된 法은 各國의 商法規定과 MIA 第17條 내지 第20條에 成文化되어 있지만 非海上(non-marine)부문에서 海上保險法의 조문을 적용한 法院의 判例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⁴⁾

Ⅲ. 告知義務 對象의 比較檢討

1. MIA와 商法上の 告知義務者 및 對象

(1) 商法上の 告知義務者

商法에서는 告知義務를 지는 者는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로 規定하고 있다.²⁵⁾ 한국 商法 제651조에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는 被保險者가 告知義務者로 규정되어 있다. 人保險에서는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부담시키는데 문제가 없으나 損害保險에서는 특히 타인을 위한 保險契約의 경우 被保險者가 保險者와 직접적인 交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保險契約者만 契約체결의 당사자가 되므로 被保險者에게 고지의무를 부담시킬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保險契約은 被保險者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체결되는 경우가 드물고 대개 위험사정을 잘 알고 있다. 만일 損害保險의 경우 保險契約者에게만 고

21) 商法 第651條(2): 保險者가 書面으로 질문한 사항은 重要한 事項으로 推定한다.

22) 大法院 1969 2. 18 宣告 68대 2682判決.

23) 日本 大審院連判 大正 6.12.14 判決

24) R.J. Lambeth, op cit, p. 21. ; 예를 들면, Lambert Cooperative Insurance Society Ltd. C.A.(1975) 2. Lloyd's Report 485] 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5) 商法651條

告知義務를 부과하게 되면 保險契約者가 危險事情에 대하여 전혀 몰라서 고지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保險契約者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告知義務의 違反이 성립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被保險者에게 이 의무의 부과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나 被保險者가 계약체결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안자만을 의미하므로 保險契約者가 될 것이다. 특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체결시에 被保險者는 보험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보험계약자만이 계약에 관여하므로 告知義務者는 保險契約者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被保險者가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 알수 없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격지간에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로부터 危險事情을 듣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부담시킬수 없다. 이 경우는 被保險者의 告知義務違反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²⁶⁾.

또한 동일한 계약에 保險契約者가 複數가 존재할 경우에는 모두 이 의무를 부담한다. 동일한 告知事項에 대하여 그중 일방이 고지하면 중복하여 고지할 필요가 없다.

(2) MIA上的 告知義務者

英國 海上保險法에는 타인을 위한 保險契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保險契約者라는 概念이 존재하지 않으며, 告知義務를 부담하는 것은 결국 被保險者에만 한정된다²⁷⁾. 被保險者는 계약이 成立되기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保險者에게 告知하도록 明示하고 있다.

(3) 代理人에 의한 告知義務

한편 保險契約이 被保險者인 本人(principal)이나 그 代理人(agent)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도 被保險者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告知義務의 責任을 진다.²⁸⁾ 告知義務를 이행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被保險者의 代理人이 保險契約를 체결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도 고지의무를 지니게 된다.

26) 今村 有, 前掲書, 130面.

27) MIA 18 (1) . …… the assured must disclose to the insurer, before the contract is concluded, every material circumstance which is know to the assured, ……

28) Fitzherbert v. Mather (1785)

따라서 保險契約者의 代理人은 保險契約者와 동일한 지위에 있게 되므로 신중하고 성실하게 告知義務 履行을 하여야 한다²⁹⁾. 이러한 고지의 義務履行을 게을리 하면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부실고지가 된다. 英國海上保險法은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대리인에 의해 체결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保險者에게 고지하여야 한다.³⁰⁾

(a) 代理人이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 保險代理人은 통상 업무상 당연히 알고 있는 모든 사항, 또는 代理人으로서 당연히 통지받은 모든 사항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b) 피보험자가 告知할 의무를 가진 모든 중요한 사항, 다만 被保險者가 늦게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代理人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상기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英國海上保險法 제19조 규정은 代理人이 고지할 중요 사항의 범위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被保險者의 代理人으로서 통상적인 업무수행상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代理人의 過失로 발생한 不實告知는 곧 本人의 不實告知로 간주된다는 1887년 Blackburn v. Vigors사건이 있었다. 『代理人이 통상의 업무상 선박과 화물의 상태에 관하여 保險契約者인 本人에게 정보를 통지할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 所有者가 保險者에게 통지할 중요사항에 관한 情報를 가지지 않고서 保險契約를 체결한다면 그러한 保險契約는 사실상 不實告知(misrepresentation) 또는 默秘(concealment)³¹⁾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보험자는 자기와 被保險者 사이의 계약을 바탕으로 하여 被保險者가 통상의 업무상 당연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保險者에게 통지할 것으로 추정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유자격의 정직한 代理人을 고용함으로써 商去來契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정보통로를 이용하여 保險의 目的物에 관한 모든 올바른 情報를 얻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條件은 대리인이 詐欺 또는 怠慢

29) 代理人은 本人을 대표하기 때문에 代理人의 行爲, 意思, 認知가 本人의 行爲, 意思 및 認知라고 간주되므로 被保險者와 같이 告知義務의 責任을 지게 된다.(E.R, Hardy Ivamy, op.cit., p.43.)

30) MIA, 19 ; 商法 第646條.

31) 被保險者에 대한 不實告知는 가끔 默秘로 쓰이고 있으나 不實告知로 表現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Chalmers, Marine Insurance Act 1906, p. 30.)

때문에 보험을 제시한 일방 당사자는 보험자가 당연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모르고 있고 또한 그러한 부지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3) 告知時期

그러면 告知義務者³²⁾가 언제까지 고지를 하여야 하는가. MIA에서는 고지시기를 保險契約이 성립하기 前(before the contract is concluded)로 규정하고 있다³³⁾.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保險契約이 성립되기 前인 保險者가 請約을 承諾하기 前이면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被保險者는 보험계약이 최초로 성립되기 이전 모든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뿐만 아니라 기간보험(time policy)에서 그 이후 갱신할 때마다 새로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³⁴⁾.

商法에도 保險契約이 成立할 때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告知時期는 MIA나 商法이나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告知義務는 계약의 청약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이 성립될 때까지 危險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2. 不告知와 不實告知

不告知(non-disclosure)란 보험계약자가 그가 사실상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뿐만

32) 告知義務者라 함은 商法에서는 保險契約者와 被保險者가 될 수 있으며, MIA에는 被保險者가 될 것이다. 이들의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를 포함하는 것으로 告知義務者라 할 수 있다. 이 兩者는 差異點이 있을 것같으나 MIA는 保險契約者의 概念이 없기 때문에 韓國에서의 保險契約者는 被保險者의 代理人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以下에서는 兩者를 실질적인 區分없이 使用하기로 한다.

33) MIA 18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the assured must disclose to the insurer, before the contract is concluded, every material circumstance which is known to the assured is deemed to know every circumstance which,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ought to be known by him. If the assured fails to make such disclosure, the insurer may avoid the contract.

34) Lambert Cooperative Insurance Society Ltd., [C.A.(1975) 2. Lloyd's Report 485]

아니라 정상적인 業務遂行過程에서 알게된 사항을 告知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保險契約者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보험자에게 지고 있는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지의 不履行은 그것이 故意에 의하든 過失에 의하든 보험업자의 요구에 따라 그 보험이 無效化될 수 있다.³⁵⁾

Bedouin號 事件에서 Lord Esher M.R은 『被保險者는 法律이 어떠한지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 被保險者가 保險者에 대해서 알려야 하는 것은 “모든 사항”이 아니라 “모든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被保險者는 중요한 사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자로부터 質問을 받은 경우에는 정직하게 대답할 의무가 있다. 만약 피보험자가 속일의도로 虛僞의 對答을 한 경우에는 비록 중요한 사항이 아닐지라도 그 保險契約은 無效가 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³⁶⁾.

한편 不實告知(misrepresentation)란 保險契約者가 詐欺나 惡意가 있건 없건간에 중요한 사실을 진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를 의미한다. 保險契約者의 거짓진술로 인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러한 保險契約은 保險者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다.³⁷⁾ 진술이 事實인가 虛僞인가의 여부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判別하여야 할 事實의 問題이다. 그리고 保險契約者側의 陳述은 완전하고 본연의 문맥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진술이 본질적으로 정확하다면 사소한 부실의 진술이나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생략은 반드시 그것이 虛僞 또는 不正確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³⁸⁾ 陳述의 正確性 與否는 특별한 경우의 사실뿐 아니라 주변상황에 의해서도 고려될 수 있다.³⁹⁾

3. 重要な 事項

(1) 重要な 事項의 判斷基準

被保險者는 告知義務를 이행함에 있어서 모든 중요한 사항(every material circumstance)을 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무엇이 구체적으로 중요한 사항인지에

35) E.R. Ivamy, op.cit., p. 134.

36) R.J. Lambeth, op.cit., p. 23.

37) Ibid., p. 23. ; Colinvau, The Law of Insurance, p. 38.

38) E.R. Hardy Ivamy, op.cit., pp. 184-193.

39) Ibid., pp. 171-172.

대해서는 명시적인 기준이 없다. MIA 18조 2항에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떠한 事情이 重要な 事項인가 여부는 保險者에게 그것이 중요한지 아닌지 관련 피보험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항이 신중한 保險者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한 事實問題이다⁴⁰⁾. 따라서 고지되지 않는 어떤 특정의 사항이 중요한 것인지의 여부는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결정되어야 할 사실문제⁴¹⁾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MIA 제18조(2)에는 고지사항을 ① 『피보험자에게 알려진 중요한 사항과 ② 被保險者가 통상의 업무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⁴²⁾, 중요한 사항의 評價基準은 신중한 保險者가 保險料를 산정하는데,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 규정하고 있다.⁴³⁾

그러므로 被保險者가 危險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保險者에게 통지되었더라도 신중한 保險者의 判斷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요한 事項이 아닐 것이다.

이로 인해 중요한 사항의 判斷基準은 兩當事者의 立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紛爭의 소지가 있다.

① 通常의 業務過程에서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

被保險者는 通常의 業務過程에서 알고 있는 사실만 告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被保險者가 通常인 업무수행상 알았어야 하는 사항도 고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被保險者가 단순히 몰랐다는 사실을 가지고 不告知 事由가 되지 않는다⁴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被保險者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가

40) R.J. Lambeth, op.cit., p. 23.

41) 英國海上保險法에도 이러한 趣旨의 條項을 두고 있다.

MIA 18(4): whether any particular circumstance, which is not disclosed be material or not is, in each case, a question of fact.

42) MIA 18(1).

43) MIA 18(2).

44) Robert H. Brown, Marine Insurance, 5th ed., witherby, 1986. p. 87.
Proudfoot v. Montefiore (1867) L.R. 2 Q. B. 511.

아니라 被保險者가 通常의 業務遂行상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이 무엇인 가이다. Berger and Light Diffuser Pty Ltd. v. Pollock사건(1973)⁴⁵⁾에서 鐵鋼射出機呪物(steel injection moulds)상품에 瑕疵內容이 기재된 事實을(包裝不充分, 中古品積載) 被保險者의 대리인이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은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被保險者도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⁴⁶⁾.

被保險者가 통상의 업무상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례는 London General Insurance Co. Ltd. v. General Marine Underwriters' Assn. Ltd.사건(1921)⁴⁷⁾이 있다. 동 사건에서 原告는 汽船 vigo號에 실린 貨物을 積貨保險으로 인수하였는데, 원고는 재부보할 예정이었다. vigo호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사실은 1918년 9월 24일 영업시간 후에 로이즈에 알려졌다. 익일 오전 10시전에 로이즈는 그 사실을 원고를 포함한 會員社들에게 災難報告書(casualty slip)를 발송하였다. 原告는 업무가 바빠서 그 災難報告書를 읽지 않고 同日 오전 10시에 대리인에게 재부보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代理人은 그날 오후 4시에 피고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재보험자도 그 재난보고서를 읽지 않았다. 상기 세당사자는 再保險契約를 체결했을 때 재난의 사항을 몰랐다. 被告는 原告가 알고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중요한 사항을 미고지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보상책임을 거절하였다. 이 事件에서 Bailhache판사는 『당시 배포된 災難報告書에서 原告는 災難事實을 충분히 알수 있었고, 따라서 原告는 화재발생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으며, 原告는 代理人에게 재보험 부보통지하여야 했을 때 재난에 관한 정보를 통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며, 被保險者(原受保險者)가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중요한 '사항을 미보고하였으므로 被告(再保險者)는 報償責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⁴⁸⁾

한편, 保險者側의 『중요한 사항』의 判斷基準은 피보험자측의 判斷基準과 상반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英國海上保險法 제18조 제2항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신중한 保險者가 保險料 算定에 있어서 또

45) (1973) 2 Lloyd's Report 442.

46) E R.Hardy Ivamy, op.cit., p. 40.

47) (1921) 1 K.B. 104.; 4 Lloyd's Law Report 382.

48) R.J. Lambeth, op.cit., p.26.

는 그 危險을 인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⁹⁾ 일반적으로 保險者의 重要事項에 관한 判斷基準은 客觀的인 妥當性을 判斷要件으로 하는 『客觀的 判斷基準說』과 관련 보험자의 주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 『主觀的 判斷基準說』이 있다. 英國 海上保險法에 의하면 신중한(prudent) 보험자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상황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 後者인 主觀的 判斷基準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2) 愼重한 保險者

현실적인 詐欺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不實告知나 불고지가 있다 할지라도 危險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이 아닌한 告知義務違反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告知나 불고지된 事實중 重要性(materiality) 與否를 判斷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지나 不告知된 사실의 중요성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判斷基準은 不告知로 인하여 신중한 保險者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여부이다. 여기서 신중한 保險者의 기준에 대한 사건이 Associated Oil Carriers, Ltd. v. Union Insurance Society of Canton, Ltd.,⁵⁰⁾간에 발생하였다.

“獨逸에 용선된 英國船舶의 所有者가 선박의 운임을 전쟁위험으로 부보하였다. 용선자가 적국이었기 때문에 傭船契約이 不法契約으로 되었으며 군주역지로 운임의 전손이 발생하였다. 戰爭이 발생되기 前 保險契約締結에 앞서 신중한 保險者는 전쟁위험으로 인한 용선계약의 不履行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保險者는 傭船者가 단지 독일인이라는 사실로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란 점이 입증되었다. 法院은 이를 근거로 하여 契約締結 당시 傭船者가 獨逸人임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不告知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判決하였다.

이 사건에서 “愼重한 保險者란 같은 시대에 동일한 분야에 종사하는 경험과 지식을 풍부하게 겸비한 일반의 보험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통찰력을 갖춘 보험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보다도 높은 지식과 先見之明을 가진 보험자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하였다. 단지 신중한 保險者라 함은 합리적인 보험자와 같은

49) MIA 18(2) Every Circumstance is material which would influence the judgement of a prudent insurer in fixing the premium, or determining whether he will take the risk.

50) (1917) 2. K.B. 184.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⁵¹⁾

그런데 慎重한 保險者의 意味가 ① 直接 保險契約을 체결한 保險者만을 의미하는 主觀的 判斷인지 아니면 ②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신중한 保險者를 의미하는 客觀的인 判斷基準인지에 대해서는 英美法과 大陸法간에 다소의 差異가 있다는 點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④ 英美法の 立場

Arnould는 告知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그것이 당해 保險者의 判斷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不告知가 成立되지 않는다고 하였다.⁵²⁾

이러한 Arnould의 見解와 같은 사례가 Berger and Light Diffusers Pty Ltd. v. Pollock事件⁵³⁾(1973)에서 판시된 바 있다. 동 事件에서 Kerr판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보험자가 불고지를 이유로 保險契約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문제(the facts of question)로서 신중한 보험자의 判斷基準을 적용하고, 실제 관련 保險者(the insurer in question)가 보험료의 산정과 위험의 引受與否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받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관적 判斷基準에 따르는 판시를 한 바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보험자가 중요한 사실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관련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실로 간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⁵⁴⁾. 왜냐하면, 고지의무를 인정하는 근거는 보험자가 危險測定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주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 이를 保險者에게 고지하지 않더라도 보험자는 위험측정에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告知義務의 본질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特定の 當該 保險者가 위험측정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중요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當該 保險者가 중요한 사실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신중한 保險者의 基準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重要性 與

51) Mutual Life Insurance Co. of New York v. Ontario Metal Products Co. Ltd. (1925) A.C. 44, PC.

52) Michael J. Mustill and Jonathan C.B. Gilman, op.cit., 16th ed., SS. 645, 641.

53) [1973] 2 Lloyd's Report. 442.

54) Michael J. Mustill and Jonathan C.B. Gilman, op.cit., SS. 641-642.

否의 決定에 있어서 보험자는 신중한 保險者의 要件이 具備되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신중한 保險者가 위험측정시에 아무런 영향을 입지 않았다면 告知義務 違反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⁵⁵⁾

② 大陸法の 立場

한편 英美法이 신중한 보험자에 대하여 관련 保險者인 主觀的 判斷基準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대륙법은 이와 다르다. 이와 관련한 大陸法系 國家들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통설은 중요한 사실의 判斷基準으로 特定한 保險者의 主觀的인 基準보다는 일반적으로 신중한 保險者의 客觀的인 判斷基準을 적용하고 있다. 즉 어떤 특정사실에 대한 理性的인 評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어떤 의의가 부여되는가에 의해서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이지 당해보험자에 의하여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위험사정이 중요한 사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고지해야 하는 피보험자측으로서는 신중한 보험자의 기준을 채용하는 것에 의해서 고지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保險契約者側은 자신의 판단에 의하거나 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떤 사실이 사회통념상 중요한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보험계약자는 特定保險者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또한 社會通念상 중요하지 않다고 判斷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 특정의 보험자가 이를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므로써 保險契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는 保險契約의 효용을 현저히 저해하게 될 것이고 보험계약자측에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 한편, 保險者는 保險契約締結시에 자기가 주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될 것이다.⁵⁶⁾

4. 告知義務가 必要없는 事項

告知義務가 필요한 경우는 이미 고찰한 바 있다. MIA에서 피보험자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抽象的·含蓄的·包括的으로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判例와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반대로 특수한 사정하에서는 고

55) 李殷燮, 海上保險論, 新英社, 1994., 91-92面.

56) 今村 有, 海上保險契約法論(上), 損害保險事業研究所, 1979, 141面.

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MIA 18조 (3)⁵⁷⁾에서는 被保險者가 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 危險을 減少시키는 모든 사항 ㉡ 保險者가 알고 있는 모든 사항 및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항, 保險者의 知識 또는 상식인 사항, 保險者가 통상의 업무수행상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保險者가 통지를 받아야 할 權利를 포기한 모든 사항 ㉣ 明示 또는 默示의 擔保가 있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는 모든 사항 등이다.

Carter v. Boehm(1766)事件에서 Lord Mansfield는 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①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당연히 알아야 하는 사항, ② 保險者가 고지받을 권리를 포기한 사항, ③ 위험을 감소시키는 事項, ④ 推測에 관한 일반적인 話題 (general topics of speculation) ⑤ 항해의 곤란, 계절의 종류, 폭풍의 예상, 지진 등과 같은 自然的인 危險을 야기시킬 수 있는 모든 사항, ⑥ 국가간 不和, 전쟁, 敵對行爲로 기인되는 정치적 위험을 야기시키는 모든 事項 등을 들고 있다⁵⁸⁾.

Ivamy는 告知가 必要없는 경우로 ①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 ② 위험을 감소시키는 사항, ③ 保險契約 內容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는 사항, ④ 사회복귀 기간이 경과한 과거 사항 등을 들고 있다⁵⁹⁾.

(1) 危險을 減少시키는 모든 事項

保險者의 危險이 감소되는 사항은 보험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한 피보험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이는 被保險者가 保險料率을 적게 부담하기 위해 保險者에게 通

57) MIA 18 (3).: In the absence of inquiry the following circumstances need not be disclosed, namely --

(a) Any circumstance which diminishes the risk;

(b) Any circumstance which is known or presumed to be known to the insurer. The insurer is presumed to know matters of common notoriety or knowledge, and matters which an insurer in the ordinary course of his business, as such, ought to know;

(c) Any circumstance as to which information is waived by the insurer;

(d) Any circumstance which it is superfluous to disclose by reason of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y.

58) Michael J. Mustill and Jonathan C.B. Gilman, op.cit., SS. 659.

59) E.R. Hardy Ivamy(1985), op.cit., pp. 46-53.

知하면 되지 被保險者의 義務로 規定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피보험자는 예상했던 위험이 감소됨에 따르는 보험료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⁶⁰⁾. 이는 Carter v. Boehm(1766)事件에서 지지되었다. Lord Mansfield는 『보험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피보험자가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보험증권의 명시조항에 의하여 의무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위험이 감소된 것을 보험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보험자가 3년간의 보험을 인수한 경우에 그것이 2년에 종료될 수 있음을 표시한 모든 사항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보험자가 이로의 자유재량권을 가지 항해보험을 인수한 경우 이로가 생기지 아니하는 것을 표시하는 경향을 있음을 보험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判決하였다⁶¹⁾.

(2) 保險者가 알고 있는 事項 및 現實的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商慣習을 알고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保險目的의 性質이나 狀態에 대하여 보험자가 당연히 알아야 하거나 통상적으로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항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⁶²⁾.

- ① 保險證券에 기재된 港口에서의 船積方法
- ② 目的港에서의 揚陸方法
- ③ 商慣習에 따라 甲板積載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 ④ 保險證券이 관련된 去來分野의 일반적 性質 및 事情

어떤 중요한 사항을 알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최근의 일이어야 하며, 과거에 한 때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被保險者는 보험자가 이를 알고 있다고 推定할 수 없다⁶³⁾.

(3) 告知받을 權利를 포기한 事項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고지받을 사항을 면제한 경우이다.

(4) 擔保에 의해 告知가 필요없는 경우

60) 金善光, 貿易事例研究, 東星出版社, 1992, 267-268面.

61) E.R. Hardy Ivamy, op.cit., p. 46.

62) Ibid., pp. 46-50.

63) Ibid., p.46. ; Bates v. Hewitt(1867) L.R. 2QB 595.

담보는 明示擔保(express warranty)이든 默示擔保(implied warranty)이든 불문하고 고지할 필요가 없다. 모든 航海保險證券(voyage policy)에는 堪航能力에 대한 默示擔保가 있기 때문에 被保險者는 선박의 출항시점에서 불감항 사실에 대하여 고지할 필요가 없다⁶⁴⁾.

船舶의 不堪航 能力은 保險者에게 고지하더라도 被保險者는 선박이 발항시에 반드시 감항능력을 유지하도록 상당한 注意義務(duty of due deligence)를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보험자는 이에 대한 報償責任이 없다. 결국 불감항 사실은 고지의 여부를 떠나 감항능력에 대한 默示擔保 違反으로 보험자는 면책된다.

그러나, 期間保險(time policy)은 堪航能力에 대한 默示擔保가 없기때문에⁶⁵⁾ 보험계약의 효력개시 시점에서 선박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告知되어야 한다⁶⁶⁾.

IV. 告知義務違反의 對立的 解釋論과 그 效果의 比較分析

1. 告知義務 違反 要件에 대한 對立的 解釋論

告知義務 違反이 되기 위해서는 ① 告知義務者가 保險者에 대해 중요한 사항에 관한 불고지, 또는 不實告知가 있어야 한다는 客觀的 要件이 있으며, ② 고지의무자가 불고지 또는 不實告知의 存在만으로 告知義務가 성립되지 않고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主觀的 要件을 充足시켜야 한다.

(1) 主觀的 要件

告知義務違反이 成立되려면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의 존재만으로 고지의무자가 성립됨을 인정하지 않고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즉, 고지의무자인 保險契約者 등이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

64) MIA 18 (3) (d); Cantiere Meccanico Brindisino v. Janson, (1912) 3 K.B. 452. ; E.R. Hardy Ivamy(1979) 3rd ed., p.54.

65) MIA 39 (5).

66) Michael J. Mustill and Jonathan C.B. Gilman, op.cit., SS. 670. ; Russel v. Thornton(1895), 4 H&N., 788.

에 의해 不告知 또는 不實告知한 경우에 고지의무위반이 성립된다⁶⁷⁾. 여기서 『故意』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告知하지 않거나 不實告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대한 과실』이란 보험계약자 등이 세심한 注意를 기울였으면 고지할 수 있었던 것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不告知 또는 不實告知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告知義務 違反에 있어서 重大過失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느냐에 따라 두가지 見解가 대립된다. 첫째, 不告知 또는 不實告知 自體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見解(狹義的 解釋), 둘째, 중요한 事項의 自體를 重大한 過失에 의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는 見解(廣義的 解釋)가 나누어져 있다.

前者의 견해⁶⁸⁾는 고지의무란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가 알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며, 重大한 過失이란 업무상 당연히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告知事項의 存在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立法의 목적상 告知義務가 위험측정에 있고 보험계약자에게 告知義務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保險者의 危險測定에 협력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保險契約者에게 探知 또는 調査義務를 부과하는 것은 保險契約者에게 가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告知義務는 廣義의 통지의무의 일종이지 探知義務는 아니기 때문에 保險契約者에게 탐지의무까지 부과하게 된다면 보험제도의 경제적 기능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다.⁶⁹⁾

後者の 見解는 告知義務의 목적이 保險者側에 위험측정에 관한 정확한 판단의 자료를 부여하는데 있다. 따라서 不告知 또는 不實告知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위험측정상 허위의 영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保險者가 危險測定을 정당하게 행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한 사실의 불고지 또는 중대 과실이 있어야만 고지의무의 위반이 성립되지 않고, 보험계약자측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어야만 告知義務違反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러한 探知義務를 부과해도 保險契約者側에 가혹하지 않다고 한

67) 商法 第651條.

68) 鄭熙喆·梁承圭, 前掲書, 46面.; 梁承圭, 前掲書, 107面.

69) 鄭熙喆·梁承圭, 前掲書, 46面.

다⁷⁰⁾. 따라서 後者에서의 重大과실이란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重大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사항을 불고지, 부실고지했음을 重大過失로 인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⁷¹⁾.

그러나 兩者의 解釋은 위험측정에 관한 고지의무의 기능을 감안해 볼때 후자의 견해가 합리적인 것이다. MIA 제18조 1항의 취지와도 일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2) 客觀的인 要件

告知義務 違反의 客觀적 요건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不告知 또는 不實告知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不告知』는 중요한 사항을 알면서 전혀 알리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부실고지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내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虛偽의 陳述(misrepresentation)을 하는 것이다.

保險契約者가 不告知 또는 不實告知하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고지의무위반으로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정확한 危險測定을 위해 고지내용과 사실이 부합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不實告知가 保險者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경미한 사항은 告知義務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은 保險契約의 性質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될 사실문제이며, 고지의무자인 피보험자가 무엇을 고지할 것인가 일일이 判別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이러한 점때문에 실무계에서는 청약시에 質問表(questionnaire)상의 質問事項에 대하여 不告知 및 不實告知를 한 때에 客觀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다. 질문표상의 기재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을 경우 불고지가 된다.

현행 立法과 判例中에는 이와 같이 客觀적 요건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商法은 이 立場을 지키지 않고 있다.⁷²⁾

2. 立證責任原則

海上保險契約에 있어서 保險者가 고지의무의 위반을 주장하려면 被保險者側의 不

70) 徐墩珏, 商法講義(下), 法文社, 1985, 359面.

71) 孫珠瓚, 前掲書, 345面.

72) 金峻憲 外3名, 新海上保險論, 法文社, 1994, 38面.

告知 또는 不實告知에 대한 立證을 하여야 한다⁷³⁾. 保險者가 입증하여야 할 사항은 불고지나 不實告知의 成立與否 및 告知義務에 관한 계약상 明示規定의 존재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商法에서도 保險者는 告知義務違反의 전제조건인 사실이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생긴 것임을 立證하여야 한다. 즉 告知義務의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가 그 입증책임을 진다.

保險者의 契約取消은 일방적인 意思表示로 성립되므로 결과적으로 被保險者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保險者는 관련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告知義務의 違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立證責任을 부담하는 것이 原則이다.

이에 비하여 英國에서는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보험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立證하여야 한다. 먼저 不告知가 成立되기 위해서는 ① 해상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이 보험자에게 고지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것, ② 그 사실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다는 점, ③ 불고지된 사실이 중요할 것 것이다.

다음 詐欺的 또는 善意的 不實告知를 成立시키기 위해서는 ① 고지가 중요한 사항일 것 ② 고지된 사항이 불명확하다는 점 ③ 사기의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 고지가 허위임을 알고 있을 것, 또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지 않았을 것 또는 진실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고지했을 것, 또는 善意的 不實告知의 경우에는 진실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했다는 점 ④ 고지가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해 행해졌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계약취소의 근거가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에 관한 명시적 조건의 위반에 있는 경우에는 ① 명시적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무가 계약상의 의무로 되어 있다는 점, ② 주장되는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규정에 정해진 의무에 대한 위반일 것, ③ 피보험자측이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범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⁷⁴⁾

73) Adams v. London General Insurance Co.(1932) 42 Lloyd's Law Report 56.

74) E.R. Hardy Ivamy, op.cit., pp. 178-179.

3. 告知義務 違反의 效果

(1) 韓國 商法上 規定

保險者는 保險契約者의 告知의무위반이 있으면 保險事故의 前後을 불문하고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보험자의 契約해지는 그 의사표시가 契約자에게 도달한 때에 效力이 발생하고⁷⁵⁾ 해지는 형성권이다. 解止의 效力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고 소급효과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자는 保險契約者로부터 기수령한 保險料를 반환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未收保險料가 있다면 保險料不可分 原則에 의거 청구할 수 있다⁷⁶⁾.

한편,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契約을 해지한 경우에도 保險者는 領收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기지급한 보험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⁷⁷⁾

그러나 保險者의 解止權 行使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解止權의 行使時期가 經過(해지권의 소멸)된 경우

保險者가 告知義務 違反의 事實을 안날로부터 1월, 契約이 成立한 날로부터 3년 이 지나면, 그 契約을 解止할 수 없다⁷⁸⁾. 해지권의 행사시기를 제한하는 이유는 법 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러는데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후에 告知의무위반에 대한 다 탐은 없다.⁷⁹⁾

② 保險者가 保險引受時 告知違反事項을 알고 있었거나 重大過失로 알지 못한 경우

保險者가 告知義務 違反事實은 안날이라 함은 契約체결권이 있는 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안 날을 의미한다⁸⁰⁾. 그러나 保險者가 보험을 인수함에 있어서 告知의무 위반사항을 알았거나 重大한 過失로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契約을 解止할 수 없다⁸¹⁾. 이는 保險者가 保險을 引受함에 있어서 告知의무 위반사항을 알았거나 重大한 過失로 이를 알지 못한 것이 保險者 自己過失에 의한 위험의 선택이기 때문에 解止權을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5) 民法 第543條, 第111條.

76) 崔基元, 商法學新論(下), 博英社, 1995. 561面.

77) 商法 第655條.

78) 商法 651條.; 大法院 86. 11. 25. 85 다카 2578.

79) 梁承圭, 前揭書, 109面.

80) 보험계약체결권이 없는 영업소장, 모집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81) 商法, 第651條 但書.

③ 因果關係의 不在

韓國商法 제655조에서는 告知義務違反 사실이 保險事故發生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 보험자는 保險金額의 支給義務를 지도록함으로써 保險者의 解止權을 제한하고 있다.⁸²⁾ 保險契約者의 立場에서도 不告知 또는 不實告知로 중요 사항과 사고발생사이에 因果關係가 없음이 증명된 때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의 既支給된 保險金 返還을 거절할 수 있다⁸³⁾. 이는 保險事故가 고지사항과 因果關係가 없는 다른 사유로 생긴 경우에 被保險者나 保險受益者의 利益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⁸⁴⁾.

그러나 어디까지나 保險事故와 告知義務違反 事項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에 한하여 保險者의 解止權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의 예외사항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保險事故 發生後에 保險者가 告知義務 違反을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保險契約者(피보험자)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여 보험자의 解止權을 저지하여야 할 것이다. 즉 保險事故와 告知義務 違反事實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보험계약자가 立證할 문제이며,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운 때는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야 할 것이다.

(2) MIA의 規定

英國海上保險法 제18조 1항⁸⁵⁾에 『만일 被保險者가 그러한 告知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契約을 取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保險者는 被保險者에게 保險料를 還給하고 保險契約의 終結을 말할 수 있으며, 또는 보험계약을 확인하고 그 유효함을 통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항은 強行規

82) 商法 第651條 但書: Berger and Light Differs Pty. Ltd. v. Pollock사건(1973)에서도 保險者인 被告는 被保險者가 不告知로 인해 保險事故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立證하지 못해 본 事件에서 敗訴하였다

83) 大法院 69. 2. 18. 68 다 2082; 大法院 92. 10. 23. 92 다 28259.

84) 梁承圭, 前掲書, 110面.

85) MIA 18 (1) ∴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the assured must disclose to the insurer, before the contract is concluded, every material circumstance which is known to the assured, and the assured is deemed to know every circumstance which,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ought to be known by him. If the assured fails to make such disclosure the insurer may avoid the contract.

定이 아니라 保險者에게 계약의 존속여부를 선택하게 할 수 있는 選擇的 任意規定이라 할 것이다. 被保險者는 보험목적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할 의무를 지우면서 동시에 중요한 사실을 保險者에게 詐欺的(fraudulent)이거나 善意이거나 알리지 않으면 不實告知의 效果로서 保險者는 선택적으로 계약의 취소권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⁸⁶⁾.

그러면, 保險者가 取消權 行使時期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解止할 時期의 選擇에 관하여 英國 海上保險法에는 명문규정이 없다. 보험자가 被保險者의 부실고지를 알고 나서 상당한 기간내에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保險者는 계약을 追認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⁸⁷⁾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保險事故가 발생하더라도 保險者는 被保險者의 不實告知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는 保險契約의 本질상 保險者가 상당한 기간내에 不實告知를 이유로 보험계약의 종료 내지 취소를 被保險者에게 통지할 경우에, 被保險者는 다른 有效한 保險契約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보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被保險者는 有效한 契約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보험자의 不實告知는 많은 경우 船舶이 全損되었거나 또는 保險契約이 종료되고 난 뒤에 밝혀지기 때문에 保險實務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보험자가 被保險 目的物인 船舶 또는 貨物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또는 保險契約이 終了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不實告知를 알았을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機會를 가질수 있도록 保險者는 保險契約을 取消할 것인지 繼續擔保할 것인지 상당한 기간내에 선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告知와 擔保와의 關係

告知義務와 擔保는 形式上 類似하지만 그 效果面에서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告知란 危險의 測定의 基礎가 되는 중요한 사실 또는 사정에 관하여 保險契約을 체결하는데 保險者에게 口頭나 書面으로 진술하는 것이다.

擔保는 危險測定을 용이하게 하는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被保險者에게 특정사항의 存否 또는 被保險者가 이행하거나 충족시켜야 할 사항을 約定한 것이다. 그러므로

86) E.R. Hardy Ivamy, op.cit., p. 69.

87) Ibid., p. 69.

兩者는 그 效果面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擔保는 계약의 構成要素로 當事者가 합의한 契約의 一部를 構成하지만 告知는 계약성립시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陳述로 계약의 一部가 구성되지 않는다.

4. 告知義務 違反에 대한 民法과 MIA의 比較

告知義務 違反의 效果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保險者는 保險契約을 해지할 수 있는데, 錯誤나 詐欺로 인한 告知違反이 있을 경우 民法上的 規定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民法에서 法律行爲의 중요한 부분에 錯誤가 있는 意思表示나 詐欺에 의한 意思表示는 取消할 수 있고 취소한 때에는 처음부터 無效인 것으로 본다⁸⁸⁾.

고지의무위반의 效果에 관한 商法の 規定과 民法의 錯誤, 詐欺에 의한 法律行爲의 取消에 관한 規定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여러 학설이 나누어 지고 있다.

(1) 民商法 適用說

고지의무에 관한 商법의 規定과 사기, 착오에 관한 民법의 規定은 그 근거, 요건, 效果面에서 각각 별개독립의 제도이어서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는 없다고 한다⁸⁹⁾.

(2) 商法 單獨適用說

고지의무위반의 效果에 대한 商법규정은 民法規定에 대한 特別이므로 商法이 적용되는 한 錯誤, 詐欺에 관한 民法의 規定은 排除된다는 것이다. 商법이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보험단체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保險契約을 체결할 당시에 소급하여 無效로 하는 것을 피하고 장래의 효력이 있는 해지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錯誤, 詐欺에 관한 民法規定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는 것이다.

(3) 民商法 區別說(折衷說)

保險者에게 錯誤가 있는 경우 民법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에게 詐欺

88) 民法 109條, 第110條

89) 權豪烈, 告知義務違反의 效果, 『法曹』, 1984. 12. 80面.

가 있을 때에 民法規定에 의한 取消權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⁹⁰⁾ 즉 保險者의 錯誤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이유로 保險者는 契約을 取消할 수 없으나 保險契約者의 錯誤나 詐欺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이유로 保險者는 民法上의 取消權을 행사할 수도 있고 동시에 商法上의 解止權을 행사할 수도 있다. 특히 商法上의 除斥期間이 지난 때에 보험자는 사기를 이유로한 取消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설은 告知義務者에게 詐欺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나 착오의 경우는 害意가 없으므로 보험자와 더불어 보험계약자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詐欺로 인한 意思表示의 경우는 保險者는 보험계약자를 민법 제110조에 의해 취소가 가능하다. 詐欺로 인한 告知義務 違反은 保險者를 故意로 속여서 착오게 빠지게 하는 違法行爲이므로 이 경우까지 保險契約者를 보호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適用을 긍정한다.

V. 結 論

우리나라의 海上保險 業界에서는 英國의 로이즈 보험증권을 標準樣式하여 新協會 貨物約款과 舊約款을 並行使用하고 있다. 이러한 保險約款은 英國의 해상보험법과 관습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다⁹¹⁾. 英國海上保險法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보험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MIA는 韓國 商法과 비교할 때, 被保險者의 告知義務가 몇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韓國商法상의 명시된 告知義務違反에 관한 사항은 國際性이 짙은 海上保險契約에 保險契約者와 被保險者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적용하고 해석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告知義務事項과 관련한 몇가지 問題點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告知義務者는 保險者에게 모든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는데 「중요한사

90) 大法院 91. 12. 27. 91다 1165.; 孫柱瓚, 前揭書, 527面.

91) 대부분의 保險證券은 新約款 第19條, 保險證券의 本文下段의 準據法約款상에 「保險은 英國의 法律과 慣習에 따른다.」고 明示되어 있다.

항』의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

被保險者는 告知義務를 이행함에 있어서 고지하여야 할 모든 중요한 사항(every material circumstance)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 다만 MIA 18조 2항에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18조4항에 "고지되지 않는 어떤 특정의 사항이 중요한 것인지의 여부는 각 경우에 있어서 결정되어야 할 사실문제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事項의 判斷基準은 양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우려가 있고,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형성된 판례와 관습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保險事故와 告知義務事項과 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 保險者에게 解止權을 제한하도록 但書條項을 두고 있다. 이는 고지사항과 보험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몇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① 告知義務制度가 保險者로 하여금 위험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내리고 불량위험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保險事故 發生原因을 事後的으로 문제삼는 것은 論理的 矛盾이다. ② 保險契約者가 事前에 올바른 고지를 하였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와 균형이 맞지 않다. ③ 保險者가 保險契約當時 告知義務違反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진실을 알았다면 보험자는 적어도 동일한 契約條件으로는 保險契約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험자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한 것인데 고지위반사항과 보험사고간에 因果關係가 없다는 사유로 保險者의 責任을 인정하는 것은 告知義務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제655조의 但書條項을 削除하거나 解釋時에 例外規定으로 엄격히 制限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海上保險契約를 체결할 때 保險契約實務者들은 보다 중요한 사항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 告知하여야 할 것이며 간과하기 쉬운 주요점검목록(check list)을 갖추어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하다.

〈參 考 文 獻〉

- A.G. Guest, M.A. Anson's Law of Contract,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 Alex L. Park, The Law and Practice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Cornell Maritime Press, 1987.
- Dover victor, A handbook to Marine Insurance Witherby & Co. Ltd., 1970.
- E.R. Hardy Ivamy, Casebook on Insurance Law, 4th ed., Butterworths, 1984.
- , Marine Insurance, 5th ed., Witherby & Co. Ltd., 1986.
- , Charlmers, Marine Insurance Act 1906, 6th ed., Butterworths, 1966.
- ,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Law, Butterworths, 1975.
- Edwin W. Patterson, Essentials of Insurance Law, 2nd ed., 1957.
- J. Kemneth Goodacre, Marine Insurance Claims, 2rd ed., Witherby & Co. Ltd., 1985.
- Michael J. Mustill and Jonathan C.B. Gilman, Arnou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Stevens & Sons, 16th ed., 1981.
- Robert H. Brown, Marine Insurance, 5th ed., Witherby & Co. Ltd., 1986.
- Robert Merkin, Colinvaux's Law of Insurance, Sweet & Maxwell, 1990.
- William B. Vance, Law of Insurance., 3rd ed., 1951.
- 葛城照三·今泉敬忠 譯, 英國海上保險法論, 早稻田大學校, 1966.
- 權豪烈, 告知義務違反의 效果, 『法曹』, 1984. 12.
- 今村 有, 海上保險契約法論(上), 損害保險事業研究所, 1979.
- 金峻憲 外3名, 新海上保險論, 法文社, 1994.
- 木村榮一, 海上保險, 千倉書房, 1983.

- 朴容燮, 英國海上保險法上 被保險者의 告知義務에 관하여, 海法會誌, 1983.
- 백정현, 航空保險에 있어서 保險契約의 成立과 告知義務, 保險學會誌 제23집.
- 徐燉珏, 商法講義(下), 法文社, 1992.
- 徐斗錫, 海上保險에서 被保險者의 告知義務, 國際商學 第5卷, 1991. 9.
- 孫珠瓚, 商法(下), 博英社, 1995.
- 梁承圭, 告知義務에 관한 考察, 서울大學校 法學, 第26卷, 1985.
- , 保險法, 三知院, 1993.
- 李殷燮, 海上保險論, 新英社, 1994.
- 李時煥, 貿易保險論, 大旺社, 1994.
- 錢昌原, 貿易保險實務, 日新社, 1994.
- 鄭燦亨, 告知義務, 月刊考試, 1994. 6.
- 鄭熙喆, 鄭燦亨, 商法原論(下), 博英社, 1995.
- 崔基元, 商法學概論, 博英社, 1995.
- , 商法學新論(下), 博英社, 1995.